

2016년 12월 2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2.20.(화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6. 12. 19.(월)	담당부서	무역기술장벽협상과
담당과장	신 지 현 과장 (043-870-5540)	담당자	유 경 희 팀장(043-870-5543)

17년부터 한-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본격 시행 - CCC인증 전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우리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 -

□ 한·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내년부터 중국 강제인증(CCC: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)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을 받는 길이 열렸다.

○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'16.12.20일(화) 서울에서 개최된 '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'에서 양국의 인증기관간 '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' 협약체결을 발표하였고,

- * 상호인정 협약체결기관 :
 - 한국(3개 기관) : KTL(산업기술시험원), KTR(화학융합시험연구원), KTC(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)
 - 중국 : CQC(중국품질인증센터)

○ 이번 협약의 체결로 내년부터 우리 기업의 중국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인 CCC인증에 따른 시간단축 및 언어로 인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.

□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이란, 생산업체로 하여금 제품판매전에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관리하는 공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.

* 양국의 강제 안전인증제도 : 한국 KC인증(Korea Certification) / 중국 CCC인증(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)

○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기전자제품의 중국수출에 필수적인 중국 CCC 인증을 받기위해 중국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시간·비용 측면에서 부담*을 호소해 왔다.

* 냉장고의 경우, 우리측 KC인증 취득기간 45일, 수수료는 250만원 소요되는 반면, CCC 인증에 90일, 수수료는 750만원(컨설팅비포함) 소요

○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양국 정부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였고, 금년 3월에는 산업부장관의 중국 방문시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한 바 있다.

○ 동 MOU를 기초로 양측은 시범적으로 6개 품목*에 대해 국제공인시험 성적서(IECEE CB) 상호인정을 실시하여 왔으며, 금번 체결한 상호인정 품목 확대협약에 따라, 내년부터는 상호인정이 우리나라 KC인증(173개 품목)과 중국 CCC 안전인증(104개 중)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분야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.

- * 상호인정 시범 품목(6개) : TV, 후드믹서, 주서, 등기구, 어댑터, 전기주전자
- * IECEE CB인증(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) :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54개국 77개 인증기관이 가입

□ 이와 함께 양국의 인증기관간 '공장심사 이행협약' 체결도 발표하였으며, 이를 통해 국내 협약 인증기관인 KTL, KTC, KTR의 심사원(審査員)도 CCC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.

○ 현재까지는 중국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한국내 우리기업의 공장으로 출장와서 공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발생시 우리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“금번 한-중 상호인정협약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아 수출과 시장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”이라고 밝히고,

○ 향후 한·중 적합성소위 등을 통해 이번 협약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,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자파분야 및 비전기전자분야까지 상호인정 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측과 조속히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하였다. 끝.

<참고. 한·중 전기전자분야 인증제도>

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기술장벽협상과 유경희 팀장(043-870-5543, 010-6569-688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□ CCC 인증 (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)

- 중국 강제인증제도로 중국 내 생산·유통 및 수입품에 대하여 중국국가 표준에 따라 안전 및 품질인증을 받아야만 중국내 판매 가능
- 강제인증대상 : 20분야 158종
 - * 가정용 전기용품, 차량 및 안전제품, 정보기술장비, 전동공구, 용접기, 음향 영상설비, 전선케이블 등
- 인증기관 : 중국품질인증센터(CQC)에서 사실상 대부분 인증 수행하고, CQC에서 지정한 시험기관(150여개)에서 시험 실시

※ CCC 인증 절차 (처리기한 90일)

- ▶ (인증신청) 인증기관 신청서 제출 (국내에 중국이 지정한 CCIC Korea가 독점)
- ▶ (형식시험) 중국 시험소에서 실시하므로 중국으로 샘플 송부
- ▶ (공장심사) 품질시스템, 신청제품과의 일치성 확인
- ▶ (인증서 발행) 보고서 검토 후 인증서 발행, 마크 부착
- ▶ (정기공장심사) 인증 취득 후,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
- ▶ (인증서 갱신)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, 만료 90일 이전에 갱신 신청 필요

□ 한국·중국 전기전자분야 강제인증제도 비교

구분	KC인증 (한국)	CCC 인증(중국)
인증관리 방식	제품 유해도에 따라 3가지 유형	
① 제품시험	안전인증제도 : ①+②+③	모든 품목
② 공장심사	안전확인제도 : ① (지정시험기관)	①+②+③
③ 정기검사	공급자적합성제도 : ① (시험기관 선택 자유)	
안전관리 품목수	173 품목 (인증 39, 확인 63, 공급자 71)	104 종 (CCC인증 분류)

□ 한·중 전기전자제품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추진방향

- 양국의 시험인증체계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 (IECEE CB)체계를 활용, 시험인증기관 간 상호인정 협약을 중심으로 추진
 - * 시험인증기관 간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방법은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미국, EU 등 선진국과의 상호인정에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임
- 양국 시험인증기관들이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선행적으로 양국 정부간 합의 추진

□ 기대효과

- 시간단축, 비용절감 및 언어소통 : 국내기관에 CCC인증 신청(대행), 샘플을 국내 기관에 송부, 시험절차협의 등에 대한 언어소통 편리성
- KC와 CCC를 동시에 신청하여 진행하므로 편리(시간, 시험비용 절약)
- 상호인정은 대중국수출 경쟁국 대비 아국만의 배타적인 시험인증 애로완화 수단 전망

< 상호인정 전후 비교(국내업체 관점에서) >

구분	현행	상호인정 이후
CCC, KC 신청	· CCC(CCIC 코리아, 중국기관), · KC(국내 인증기관)으로 이원화	· 국내 MoU기관에 KC, CCC 동시신청
샘플 송부	· 중국으로 샘플 송부 (IECEE CB성적서 제출 시)	· 국내 MoU기관으로 샘플 송부
IECEE CB성적서	· 중국은 전기안전 일부항목만 인정	· 국내발행 전기안전성적서 중국이 인정
공장심사 (시험사업 이후)	· CCIC 코리아 독점	· CCIC코리아, MoU기관 등 경쟁체계